

# 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81. 3. 1. □ 개정 : 2000. 3. 1.
- 개정 : 1987. 12. 1. □ 개정 : 2006. 3. 1.
- 폐기 : 1999. 9. 30. □ 개정 : 2012. 6. 29.
- 제정 : 1999. 10. 1. □ 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,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무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
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

**제6조(심의사항)**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전임교원, 강사, 비전임교원의 총장 임면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
2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가 정관 제4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 단, 강사, 초빙 및 겸임교원은 제1호를 예외로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국내외 연수실적
2. 학생에 대한 교수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동 추진실적

**제7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-0-7 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30일 폐기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